

정보통신부고시 제1996-50호

정보화촉진기본계획중 정보통신표준화 추진부문만을 게재합니다.

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
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계
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6년 6월 18일

정보통신부장관

정보화촉진기본계획(1996~2000)

정보통신의 표준화 추진

- 정보통신망간, 정보통신망과 단말기간, 단
 말기 상호간 호환성 연동성 확보는 고도
 정보사회의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
-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표준화가
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산업의 국제경쟁
 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추진, 멀티미
 디어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표준화 수요
 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기술수준 미흡,
 국제표준의 미제정 등으로 인해 국내표

준의 제정이 지연됨

- 국내제정표준은 국제표준의 1/10 수준
 이며 ITU 기고서 제출 비율도 0.5%에
 불과

○ 국제표준의 국내수용이 주로 번역작업
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표준
 제정활동은 미흡함

○ 일부 통신사업자와 연구소 위주로 표준
 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조업체 등 민간
 부문의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참여가 저
 조함

○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, 표준안 제안 등에
 있어 과거보다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으
 나 아직 미흡함

- ITU, ISO외에 지역표준화기구, 각종 포
 럼을 통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되고 있
 으나 참여는 미흡함

○ 선진국의 경우 급속한 표준화 수요에 부
 응하기 위하여 산업체 중심으로 사실상
 표준(de facto standard)제정활동이 활성
 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대응이 미
 흡함

■ 주진내용

○ 표준제정활동 강화

- 표준연구개발의 활성화
 - 국제표준화 추세, 국내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동향을 고려한 표준연구개발 대상선정
 - 정보통신기기, 데이터베이스, S/W 등 정보통신분야의 표준연구개발 지속적 강화
- 표준제정의 내실화
 -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표준제정
 - 새로운 기술개발시 표준안 개발작업을 병행하고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 제안
 - 필요시 사실상 표준(de facto standard) 도 표준으로 수용하여 표준제정의 신속화 도모

○ 표준화 활성화 기반 조성

- 정보통신표준화 관련자료의 발간·배포
- 정보통신표준 관련정보의 DB화 및 정보유통망 구축
- 정보통신표준 관련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 지원
- 정보통신제품의 호환성 확보, 품질향상 및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해 정보통신 표준인증제도 활성화

○ 국제표준화활동 강화

- ITU, ISO, 각종 포럼, 지역표준화기구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의 회의 참여 지원
- 국제표준화기구에 표준안 제안시 국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안
- 국제표준안 동향을 조기파악하고 외국 표준화기구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화관련 회의의 국내유치추진 